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관련 주요내용 (2021.11.1. 기준)

구분		내 용
위임장	위임기간	■ 최장 2년 ※ 위임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
	제출방법	■ 우편, 팩스, 방문 제출 또는 전산을 통해 직접 등록도 가능
	제출 관할지사	■ 환자의 주소지 관할 지사와 상관없이 모든 지사에 제출 가능 → 관할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하지 않음
	원본보관	■ 위임장 원본 서류 보존 불필요
	제출서류	■ 위임인 개인별로 ① 위임장 및 ②환자신분증 사본
	기타	■ 환자가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수령 불필요
<u>전산청구</u> 시 제출서류	제출서류 종류	■(환자 100% 수납 시) ①처방전, ②환자 100%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(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불필요)
		■(환자 10% 수납 시) ①처방전, ②환자 부담 10%에 대한 카드매출전표(또는 현금영수증), ③공단부담금 90%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
	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세부품목 기재	■세부품목 기재 없이 전체품목을 묶어서 작성 예) "채혈침 외 2종", "당뇨소모성 재료" ※ 환자가 당뇨병소모성재료 구입과 동시에 알콜솜, 일반의약품 등을 구입하더라 도 환자부담 영수증(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을 청구액에 맞춰 별도로 발행할 필요 없음
	거래명세서	■ <mark>거래명세서 제출 불필요</mark> ※ 전산청구시에는 청구서에 판매 세부내역이 기재되므로, 별도의 세부내역 증빙 불필요
	서류보존	■ 전산청구 시 약국에서 별도 보관 불필요
<u>서면청구</u> 시 제출서류	제출서류 종류	■(환자가 직접청구하는 경우) ①청구서, ②처방전, ③환자 100%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(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)
		■ (약국이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) - 약국이 환자에게 위임받아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환자의 위임장 및 환자신 분증 제출 필요 - (환자 100% 수납 시) ①청구서, ②처방전, ③환자 부담 100%에 대한 카드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(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) - (환자 10% 수납 시) ①청구서, ②처방전, ③환자 부담 10%에 대한 카드매출전표(또는 현금영수증), ④공단부담금 90%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(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)
기타	기타	■ 유예기간(2021.10.31.)까지 판매건에 대해서는 2021.11.30.까지 청구 필요 ■ 위임장 작성·제출을 위한 신분증 구비에 대해 환자 안내 실시(보험공단에서 배 포한 포스터 등 활용)